



# 포용적인 은퇴제도 설계를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

이경희 상명대학교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

-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고도화 경향, 새로운 플랫폼 노동의 출현 등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가 출현하였음
  - 2019년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은 47.8%에 불과하며, 나머지 52.2%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27.3%)와 자영업자(24.9%)이고,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중도 60.7%에 달함
-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통적인 퇴직연금제도에 포섭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며, 그 결과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1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영세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은 2년 5개월이며, 1년 미만 비중이 56.3%에 달할 정도로 동일 사업장 재직기간이 짧음
  - 월 평균임금은 172만 9천 원이며, 임금산정 단위도 시급(21.8%)과 일급(17.3%)에 기초하므로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함
  - 법정 제도인 국민연금 가입률과 퇴직급여 수혜율도 각각 37.9%, 42.9%에 불과함
- 주요 국가에서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퇴직연금제도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은퇴 저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활용 중임
  -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의 매칭 지원하는 국가로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음
    - 영국은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 대상 자동가입제 실시, 22세 이상 취업자가 본인 부담금 납부 시 정부에서 매칭 지원금 보조, 영세사업장 가입자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
    - 호주는 취업자 소득수준과 본인 부담금 납입 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지급함
    - 뉴질랜드는 18~65세 취업자 대상 자동가입 퇴직연금제도 도입, 본인 부담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함
  - 연방정부와 별도로 주정부에서 사용자와 분리된 가입자 기반 자동가입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로 미국 Auto-IRA 가 있음
    - 사용자의 역할은 은퇴저축계좌 운영으로 국한되어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해 줌
    - 이직 시 계좌 유지, 최초 부담률 3%에서 점진적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자영업자도 대상이 됨
- 우리나라도 고용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방식의 은퇴제도를 설계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정부 지원으로 면세소득 이하의 사람에게 부담금 납입 유도, 비공식 분야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함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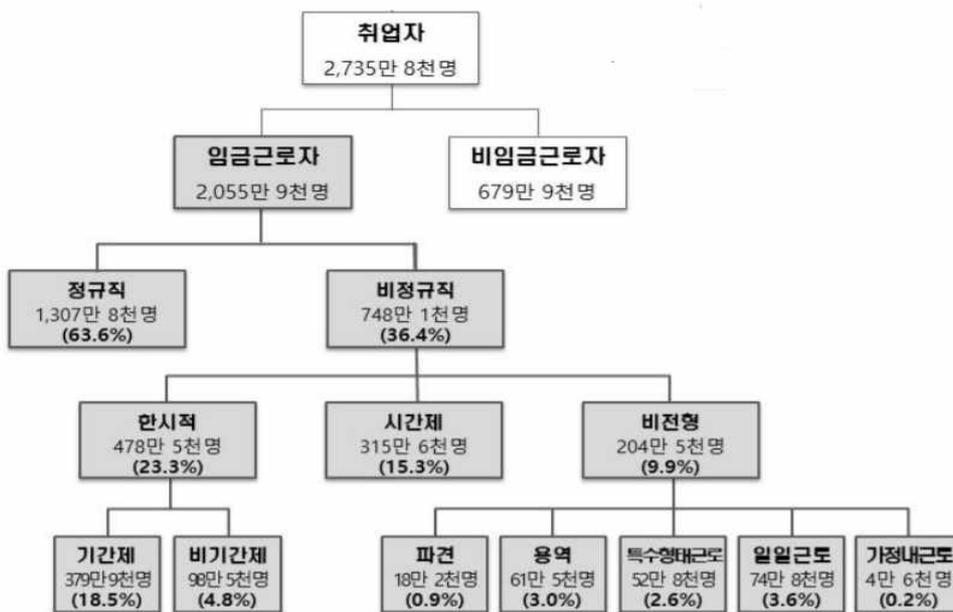
# 1. 근로형태와 은퇴준비 격차



## 가. 근로형태별 취업자 구성

- 고용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취업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의 비중이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초과하게 됨
  - 2019년 8월 기준 전체 취업자(2,735만 8천 명)에서 정규직 임금근로자(1,307만 8천 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47.8%임
  -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748만 1천 명, 27.3%)와 자영업자인 비임금근로자(679만 9천 명, 24.9%) 비중은 52.2%(1,428천 명)로 나타남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 비중은 60.7%(412만 7천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22.6%(153만 5천 명)에 불과함

〈그림 1〉 우리나라 근로형태별 취업자 구성(201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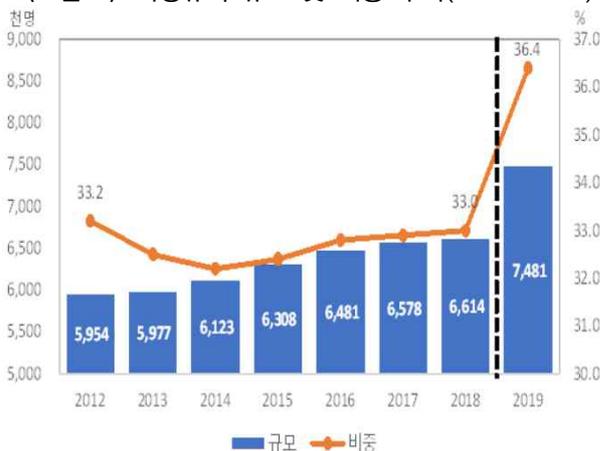


주: 1)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됨  
 2)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자료: 통계청(2019. 10. 29),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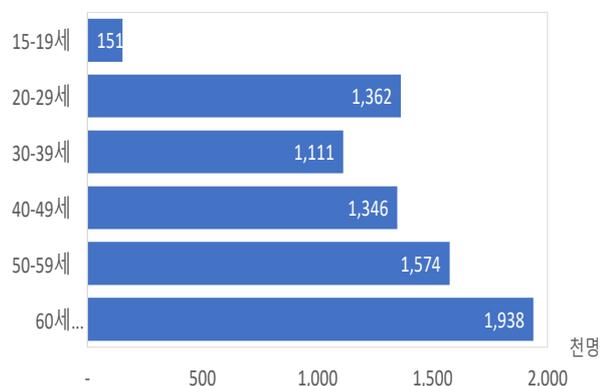
■ 비정규직 증가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변화로 보임

-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플랫폼 노동 출현 등으로 과거에 비해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자가 출현함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2년 33.2%에서 2018년 33.0%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새롭게 기간제 근로자<sup>14)</sup>가 비정규직으로 포함된 2019년 8월은 36.4% 수준임(〈그림 2〉 참조)
  -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으로 구분되며,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며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함

〈그림 2〉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추이(2012~2019)



〈그림 3〉 비정규직 연령계층별 분포(2019. 8)



자료: 통계청(2019. 10. 29),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비정규직의 연령계층별 규모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계층이 가장 큰 집단(193만 8천 명, 25.9%)이며,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20대의 비정규직 규모도 136만 2천 명(18.2%)에 달함(〈그림 3〉 참조)

나. 근로형태별 은퇴준비 격차

■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근로형태 간 양극화로 은퇴자산 역시 매우 불평등할 것으로 우려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하여 정규직(7년 10개월)보다 5년 5개월 짧고,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중이 56.3%에 달함
- 비정규직의 임금지불 적용형태는 시급(21.8%)과 일급(17.3%) 중심이어서 월급제(70.0%) 중심인 정규직

14) 2019년 조사결과에서 비정규직 규모에 과거에 포착되지 못했던 기간제 근로자 규모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2019년과 과거 연도의 비정규직 증감 비교는 기준의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직접 비교 불가함)

- 과 큰 차이를 보이며, 소득수준이 경기변동과 직접 연계되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됨
-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월 172만 9천 원으로 정규직 임금(316만 5천 원)의 54.6%에 불과함
-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7.9%, 법정 의무제도인 퇴직급여 수혜율도 42.9%에 불과함

〈표 1〉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별 특성(2019. 8)

(단위: %)

구분		임금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근속기간	평균	5년 11개월	7년 10개월	2년 5개월	-5년 5개월
	1년 미만	32.2	18.5	56.3	37.8
	1~3년 미만	21.1	21.3	20.8	-0.5
	3년 이상	46.6	60.2	22.9	-37.3
	계	100.0	100.0	100.0	-
취업시간	평균(시간/주)	35.9	38.8	30.8	-8.0
임금지불 적용형태	시급제	9.5	2.5	21.8	19.3
	일급제	7.7	2.2	17.3	15.1
	월급제	60.8	70.0	44.8	-25.2
	연봉제	17.7	23.9	6.7	-17.2
	실적급제	4.0	1.2	8.8	7.6
	기타	0.3	0.2	0.6	0.4
	계	100.0	100.0	100.0	-
임금	평균(만원/월)	264.3	316.5	172.9	0.546
사회보장 적용	국민연금 가입률	69.5	87.5	37.9	0.433
	건강보험 가입률	75.7	91.5	48.0	0.525
	고용보험 가입률	70.9	87.2	44.9	0.515
	퇴직급여 수혜율	74.0	91.7	42.9	0.468

주: 임금지불 적용형태는 임금을 산정하는 단위(시간, 일, 주, 월, 년 등)에 기초하여 파악함  
 자료: 통계청(2019. 10. 29),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저자 작성

■ 정부는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사업체 규모별 격차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2018년 말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3%, 재직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1.3%에 불과하며, 5~9인 사업장 역시 도입률 32.0%, 가입률 28.4% 수준에서 정체됨

〈표 2〉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가입 현황(2018)

(단위: 천개 소, 천 명, %)

구분	사업장 기준 도입률			근로자 대상 가입률		
	도입 대상 (A)	도입사업장 (B)	도입률 (B/A)×100	가입 대상 (C)	가입자 (D)	가입률 (D/C)×100
계	1,334	364	27.3	10,938	5,612	51.3
5인 미만	688	71	10.3	1,032	117	11.3
5~9인	356	114	32.0	1,314	373	28.4
10~29인	209	116	55.3	1,999	907	45.4
30~49인	35	25	71.6	811	437	53.9
50~99인	27	21	79.5	1,047	608	58.1
100~299인	14	12	84.6	1,421	900	63.3
300인 이상	5	4	91.4	3,313	2,269	68.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1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영세사업장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운 것은 현 제도가 전통적인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임

- 이에 전통적인 퇴직연금제도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은퇴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해짐
-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비공식 분야 종사자 증대에 따른 노후소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은퇴저축제도를 설계하여 시장에서 검증받고 있음

2. 새로운 방식의 은퇴저축 프로그램 사례 

가. 저소득층 대상 정부의 매칭 지원: 영국, 호주, 뉴질랜드

■ (영국 자동가입) 영국 정부는 2012년부터 22세 이상 소득활동에 종사하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자동가입(Auto Enrollment)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는 자에게 지원함<sup>15)</sup>

- 자동가입 대상은 ①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 ② 22세 이상, ③ 연수입 £10,000 이상 모든 소득 활동자, ④ 기초연금 수급개시연령 미만
- 2019년 이후 자동가입 시 최저부담률은 8%이며, 이를 3주체가 분담함(가입자 본인 4.0%, 사용자 3.0%, 정부 1.0%)

15)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2020), "Research and Analysis Automatic Enrolment Evaluation Report 2019"

- 정부의 지원은 세금감면(Tax Relief)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함
  - 또한, 자영업자와 같이 사용자 지원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Personal Pension Scheme)를 통해 본인 부담금의 25%를 지원함
    - 2020. 7~2021. 6 최대 납입한도: 본인 부담금 £2,880 + 정부 지원금 £720 = £3,600
  - 과세미달자에 대해서도 사용자와 정부가 총 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가입 이후 가입 상태를 지속하려는 유인이 높음
- 영국 정부는 공적기구(NEST: 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를 설립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금형 방식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sup>16)</sup>
- 취약계층이 주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계약형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가입자의 은퇴소득 극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함
    - 계약형 DC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 개별 계약 체결하도록 주선하는 역할만 수행함
    - 자동가입제도 도입으로 1천만 명 정도가 새로운 가입대상이 되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영리사업자의 관심이 낮았음
  -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자동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공적기구(NEST)를 설립함
    - NEST는 기금형(Multiple Master Trust) 방식으로 운영함
    - 복수 사용자가 참여하는 기금형 DC제도는 단일 사용자가 설정한 DC제도보다 지배구조가 우월함<sup>17)</sup>
  - 수수료 체계가 투명하고 비용이 낮아 은퇴소득 극대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수수료 수준은 (연간 부담금 × 1.8%) + (적립금 × 0.3%)
    - 디폴트 상품은 목표만기펀드(Target Date Fund), 목표수익률은 'CPI + 3%' 수준으로 설정됨
- (호주 매칭 지원) 호주 정부도 저소득 계층의 은퇴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2003년 관련법 제정(Co-contribution Act 2003)을 통해 매칭 지원금(Super Co-contribut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매칭 지원금 지원 대상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함
  - 매칭 지원금 규모는 본인의 소득수준과 부담금 납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고 지원금은 \$500임
    - 소득수준은 상한(\$53,564)과 하한(\$38,564)이 존재함
    - 전년 소득이 하한선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금 \$1,000에 대해 최고 \$500가 지원되며, 상한선 이상일 경우 매칭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16) 영국 NEST 홈페이지(<https://www.nestpensions.org.uk/schemeweb/nest.html>)

17) 계약형 DC와 달리 기금형 DC에서는 연금관리기구(예: NEST Corporation Governing Body)가 존재하여 수탁자(Trustee)로서 법에서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부담함

- 총소득이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 존재할 경우 소득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매칭 지원금은 누진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함

〈표 3〉 호주 정부의 매칭 지원금(2019. 7~2020. 6)

(단위: \$, 연간)

구분	본인 부담금				
	\$1,000	\$800	\$500	\$200	
소득수준	\$38,564 이하	500	400	250	100
	\$41,564	400	400	250	100
	\$44,564	300	300	250	100
	\$47,564	200	200	200	100
	\$50,564	100	100	100	100
	\$53,564 이상	0	0	0	0

자료: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 호주 정부는 매칭 지원금 대상자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면, 적격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sup>18)</sup>

- 퇴직연금계정에 본인이 부담금 납입
- 2가지 소득조사 통과: 가입자의 총 소득 중 10% 이상을 취업, 사업운영 또는 양자병행 통해 획득
- 당해 연도 말 기준 71세 미만
- 해당 회계연도 세금 신고자
- 적립금 총액이 지원대상 상한액(2019. 7~2020. 6 기준: 160만 달러) 미만일 것

- (뉴질랜드 매칭 지원) 뉴질랜드는 임의가입인 퇴직연금제도(KiwiSaver)의 확대를 위해 18~65세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에게 자동가입방식 적용하고, 본인 부담금 납입 시 정부가 매칭 보조금 지원함<sup>19)</sup>

- 본인이 부담금(3% 이상) 납부 시 사용자 부담금은 의무화되며, 정부도 매칭을 지원함(납부액 \$1당 \$0.5 수준)
  - 2019. 7~2020. 6 기준 본인 납부금액 한도는 \$1,042.86이므로 정부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최대 보조금 규모는 \$521.43임
- 정부는 사용자 부담금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함
- 정부 보조금은 국세청에서 퇴직연금계좌로 입금 처리함
- 저렴한 수수료 \$40(연간)를 부과함

18)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ato.gov.au/Rates/Key-superannuation-rates-and-thresholds/?page=2>)

19) 뉴질랜드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t.nz/browse/tax-benefits-and-finance/kiwisaver/>)

## 나. 가입자 본인 중심 제도 설정: 미국 Auto-IRA

- 미국에서도 전통적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방식의 은퇴저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인 은퇴저축제도(State-sponsored Retirement Plans)를 마련함
  - 2012년 이후 40개 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고, 12개 주에서 실제 실행으로 옮김
  - 새로운 은퇴저축 프로그램 유형은 Secure Choice(Auto-IRA), 복수사용자제도, SIMPLE IRAs 등임
- (Auto-IRA) 가장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자동가입 IRA(Auto-IRA)인데, 영국과 뉴질랜드의 자동가입제도와 달리 사용자 부담금 없이 가입자 본인만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설계됨
  - 공유/직(Gig)경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자 본인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우수한 종업원을 유치하고 이들의 이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직 시 적립금 이전(Rollover)이 매우 복잡하여 유연한 노동시장과 배치됨
    - 확정기여형인 401(k)제도와 하더라도 적립금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어 근로자 이직 시 이전 직장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Rollover IRA로 이전 가능함
  - 401(k)와 IRA 장점을 절충한 가입자 중심 퇴직계좌(Individualized Retirement Accounts)를 설정하여 개인이 자신의 퇴직계좌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직하도록 허용함
    - 이직 시에도 계좌 유지가 가능하며, 직장이 2개 이상일 경우 동일 계좌에 부담금 납부가 가능함
- 주정부에서 도입한 은퇴저축 프로그램은 연방의 규제(ERISA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401(k) 도입 시 수반되는 수탁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사용자의 역할은 은퇴저축제도를 운영하는 촉진자(Facilitator)로 제한됨
    - 외부의 급여공제 사업자 또는 급여공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급여에서 가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공제하는 역할만 담당하므로 제도운영에 따른 추가비용이 미미함
- 디폴트 방식으로 자동가입된 가입자는 적용제외(Opt Out)를 신청하거나 자신의 부담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자동인상장치 통해 점진적인 부담금 상향 조정도 가능함
  - 최초 가입 시 가입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부담률은 3% 수준이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동인상장치를 활용하여 최대 8%까지 부담이 가능함
    - 자영업자도 옵트인(Opt-in)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함

〈표 4〉 미국 Secure Choice(Auto-IRA) 도입 현황

주	프로그램 명칭	주요 내용
오레건주	OregonSa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 이상 2017년 7월 시행, 2020년 5월까지 전사업장 확대</li> <li>• 대상자 70%(10만 명 이상) 가입, 적립금 \$25.5million</li> <li>• 부담률 평균 5%(최저 1%, 상한 없음)</li> </ul>
일리노이주	Illinois Secure Cho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5월 시범사업 개시, 2019년 11월 정식 출범</li> <li>• 2019년 9월 기준 1,400개 사업장 가입, 적립금 \$5.25million</li> </ul>
캘리포니아주	CalSav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11월 시범사업 실시, 2019년 7월 정식 출범</li> <li>• 디폴트 부담률 3% 시작하여 매년 1%p 자동인상(최대 8%)</li> </ul>
코네티컷주	CT Retirement Security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법 제정, 5인 이상 사업장 Roth IRA 자동 가입</li> <li>• 디폴트 부담률 3%</li> </ul>
메릴랜드주	MarylandSa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제도 도입 착수, 2020년 중반 운영 개시 예정</li> <li>• 참여 사업장에게는 사업보고서 제출 수수료(\$300) 면제</li> </ul>

자료: 각 주 해당 프로그램 사이트

■ (민관협력) 주정부가 입찰을 통해 민간 투자회사를 선정하고, 투자회사가 투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투자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자산관리와 기록관리(Record Keeping)는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아웃소싱 처리하며, 주정부에서 수탁자 책무와 소비자보호를 담당함
  - 제도 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캘리포니아주: Secure Choice Retirement Savings Investment Board, 코네티컷주: Retirement Security Authority 등)
- 부적절한 투자대상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투자전략을 수립함
  -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장기 보유하는 투자전략을 통해 비용을 통제함
  - 투자전문가가 모든 계좌를 통합관리하여 수수료는 낮추고 실질수익률은 높이도록 함
- 영세 사업장 가입자(소득수준 낮고, 적립금 규모 소액)의 높은 위험회피 성향을 고려하여 적립금 중 최초 \$1,000에 대해서는 원금보존펀드에 투자하여 투자리스크를 차단함
  - 이는 장기적으로 양호한 투자수익을 낼 수 있더라도 단기적인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소액 투자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임
  - \$1,000 초과 적립금은 저비용 디폴트 펀드(예: Target Date Index Fund)에 투자함

### 3. 시사점



- 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퇴직연금제도가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자를 포괄하지 못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포용적인 연금제도가 필요해짐
  - 취업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748만 명, 1인 자영업자 412만 명은 체계적인 은퇴저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기간 불평등이 은퇴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취업자 간 근로형태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구조적인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비공식 분야 종사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은퇴저축제도를 모색해야 함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서도 기존 퇴직연금제도로 포괄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사례를 집약하면 가입자 부담금 납부 시 정부지원, 가입자 은퇴소득 극대화를 위한 민간협력, 가입자 본인 중심 계좌 도입 등임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납부 시 정부 매칭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세사업장은 독자적 제도 도입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공적기관에서 제도운영은 통합관리하고, 적립금 투자는 민간 전문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액 가입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 가장 적합한 은퇴저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kiri**